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 경 숙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6일

3. 제안이유

가.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「종자산업법」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 규정이 별도의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으로 제정(2013. 6. 2.)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나.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』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에 명시하고,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(안 제2조)

나. 산림환경연구소의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추가로 규정함(안 제6조)

다. 비밀누설 관련 규정의 자구를 수정함(안 제23조)

라.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』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함(안 제3조, 안 제8조 ~ 안 제10조, 안 제16조, 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「종자산업법」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 규정이 2013년 6월 별도의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,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부호 등 정비소요가 있음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직무육성품종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, 이에 보호 관련 용어를 추가하여,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근거 법률로 사용되는 「종자산업법」과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을 명시하여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,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무궁화 등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호 관리와 승계 설정을 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도내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- 안 제9조는 수의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문맥을 수정하여 자연스럽게 자구를 수정하고, 잘못된 문장부호를 바로잡은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23조는 비밀누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‘중자산업법 제172조’는 이미 2014년 전부개정과 함께 삭제된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어 비밀누설과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
-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맥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도 현실에 맞도록 품종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과 동시에,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